

문서번호	도로관리처-1490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16.03.16.
공개여부	공개

★주임	팀장	도로관리처장	도로교통본부장	
협 조				

『특별시도 배상책임보험 조정위원회』

2016년 운영계획(안) 보고

2016. 3.

『특별시도 배상책임보험 조정위원회』 2016년 운영계획(안) 보고

우리 공단에서 시행중인 『특별시도 배상책임보험 조정위원회』와 관련하여 2016년 서울시 배상책임보험 운영방안에 의거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함

1 관련근거

- 『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민옴부즈만 운영계획』 (감사실-2484 : `14.06.26)
- 『시민옴부즈만 참여로 심의 공정성 제고』 (도로관리처-7627 : `14.08.20)
- 『2016년 배상책임보험 운영방안 통보』 (市-도로관리과-3928 : `16.03.09)

2 운영개요 및 경위

운영개요(시도 및 구도 포함)

- 가입대상 : 특별시도 182개노선 1,165.43km
 - 도로 및 도로부속물에 의한 대인·대물 손해발생시 지급담보
 - 노선연장을 20km 내로 분할하여 가입(노선당 최대 2억원 보상)
- 가입기관 : 한국지방재정공제회(주관보험사:삼성화재)
 - ※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국내유일 행정자치부 산하 공익법인
- 가입기간 : `16. 1. 1. ~ `16. 12. 31.(최초가입 : `08. 2. 23.)
- 배상한도 : 1사고당 1억원, 노선당 2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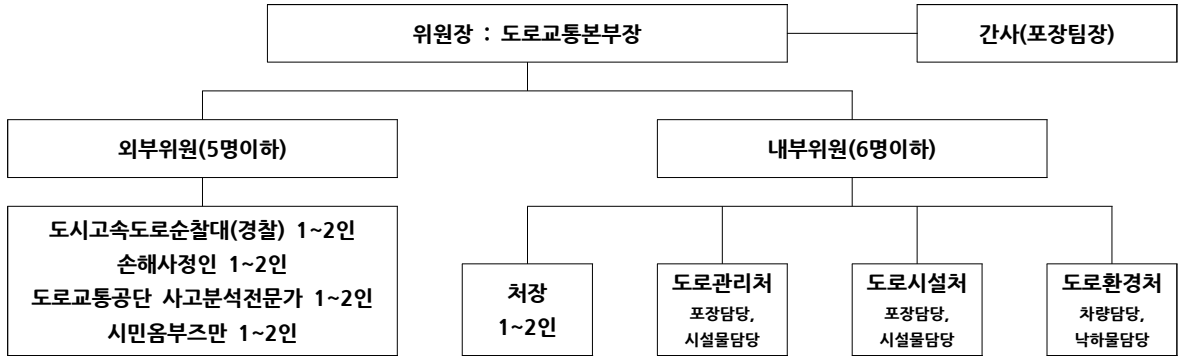
추진경위

- 2008. 2. 23. : 배상책임보험 최초가입(이후 매년가입)
 - `08년 이전에는 소송 또는 국가배상심의회를 통한 배상처리
- 2011. 1. 11. : 처리절차 기관변경 및 자기부담금 설정
 - 처리절차 기관변경(당초 : 도로관리과 → 변경 : 해당 도로관리부서)
 - 자기부담금 설정(1사고당 30만원 한도)
- 2013. 2. 6. : 조정위원회 운영시행(사업소, 자치구)
 -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보험처리 가부 결정

3 자동차전용도로 2016년 운영계획

□ 배상책임보험 조정위원회 구성·운영

○ 구 성 : 위원장 1명, 외부위원 5명이하, 내부위원 6명이하



- 소위원회 구성 : 위원장(도로관리처장) 1명, 내부위원 4~6명으로 구성

- 소위원회 개최기준 : 배상청구 5건 이하 또는 공단 관리책임이 명확한 경우

○ 운 영 : 사고접수 시 10일 이내 개최

- 보험처리는 관리부서의 과실임을 인정하는 사항으로 신중히 결정

- 피해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 보험처리 지양

- 사고접수 후 조정회의 개최가 10일 이상 지연시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중간회신

○ 역 할 :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보험처리 가능여부 결정

□ 손해배상 처리절차 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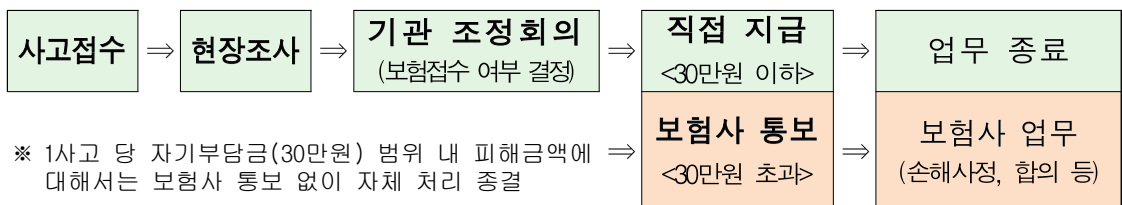
① 사고사실 명확시

○ 피해액 30만원 이하 금액은 자체지급 후 종결처리

- 사고 당시 도로상황에 따른 운전자 과실비율(25%~35%) 공제 합의 후 지급

○ 피해액 30만원 초과 금액은 보험사에 통보하여 보험사 손해사정 후 지급액 결정 및 지급 후 종결처리

- 30만원 초과액은 보험사 지급 및 나머지 금액(자기부담금)은 도로관리기관(부서)에서 지급 ※ 예) 총 보험료 1백만원 중 70만원은 보험사, 30만원은 기관 지급



※ 1사고 당 자기부담금(30만원) 범위 내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 통보 없이 자체 처리 종결

② 사고사실 불명확시

-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 절차 안내 및 사유통보
-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심의 접수시 응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

보험처리 불가유형 정립(붙임 #6 참조)

- 모든 사고접수는 유형에 관계없이 접수
-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에서 보험처리 불가결정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
- 주요내용
 - 인근 공사장 안전관리 소홀,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인 경우
 - 파손 대물 이외의 보상요구 및 불분명한 사고에 대한 과다배상 요청
 - 보행 중 단순 낙상사고 및 버스 승·하차 시 낙상사고 등
- ※ 사고접수 자체를 거부하여 2차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

중복 보험수령자 관리(2회 이상)

- 대 상 자 : 97명(붙임 #7 참조)
- 기 간 : `08 ~ `15 ※ `14년 ~ `15년 중복자 없음.
- 처리방법 : 해당 민원인이 차후 배상 요청시 피해금액에 관계없이 국가배상심의회 또는 소송처리 원칙
- ※ 민원편의 도모를 위한 제도가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사례 방지

4 행정사항

- 배상책임보험 조정위원회 운영실적 보고(분기별) - 市 도로관리과

- 붙 임 : 1. 2016년 배상책임보험 운영방안 통보(도로관리과-3928) 1부.
2. 2016년 서울시 운영방향 주요내용 1부.
3. 2016년 가입노선 1부.
4. 사고접수 현황 집계양식 1부.
5. 배상책임보험 안내문 1부.
6. 보험처리 불가유형 1부.
7. 사고접수 중복자 현황 1부. 끝.